

2020년 임시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 2020년 6월 12일(금) 19:00 - 20:00

2. 장 소 : 우리동네사람들 사무실

3. 참석이사 : 정중우 대표이사, 김인규 이사, 박세영 이사,
신수식 이사, 양순분 이사, 이철우 이사

4.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정중우 대표이사가 의사정족수(이사 7명 중 6명 참석)를 확인하여 본 법인 정관 제28조(이사회 의 개회와 의결정족수)에 의거,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되었음을 선언하다.

5. 전차회의록 수리

- 정중우 대표이사 : 박세영 이사에게 전차회의록 보고를 요청하다.
- 박세영 이사 : 별첨 자료 2020년도 정기이사회 회의록을 참고로 회의내용과 의결내용 등을 중심으로 요약 보고하다.
- 신수식 이사 : 전차회의록을 원안대로 수리할 것을 동의하다.
- 양순분 이사와 이철우 이사가 재청하다.
- 정중우 대표이사 : 전차회의록 수리에 대한 이견이 없으므로 전차회의록은 원안대로 수리되었음을 선언하다.

6. 심의의결

제1호 의안 : 법인 정관변경과 법인 등기 정정 의결

- 정중우 대표이사는 “가평균청의 재산취득 승인에 따라서 법인의 기본재산의 편입과 법인 등기상의 자산액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정관변경의 건입니다” 라고 상정하다.

○ 박세영 이사가 첫 번째는, 아래 조문에 의거하여, 목적사업용 시설[우리동네 부천장애인주간보호센터(경기도 소사구 심곡본동 665-6 2층)]임대보증금(1천만원)을 주무관청인 가평군청에 기본재산 취득을 보고하고, 가평군청으로부터 재산취득을 승인받아서 이사회에서 의결, 정관에 기재하고 이를登記하는 법적 조치 내용입니다” 라고 설명하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재산 취득 보고) 법인이 매수·기부채납(寄附採納),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은 그 취득 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 시행령』 제12조(재산의 구분 및 범위)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3.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같이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 1. 26.>

1.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등을 설치하는 데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
2. 수익용 기본재산 :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본재산

두 번째는, 법인 정관 제5조(자산구분)와 관련하여, 법인 정관상의 기본재산액(274,794천원)과 법원 등기상의 자산액(320,000천원)이 상이한 내용을 정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로 법인 등기상의 자산액(320,000천원)을 법인 정관상의 기본재산액(274,794천원)으로 정정하여 등기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라고 설명하다.

- 이철우 이사가 가평군청으로부터 재산취득에 대한 승인을 득한 내용으로, 법인 정관 변경과 법인 등기상의 자산액 정정 등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다.
- 김인규 이사와 신수식 이사, 양순분 이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법적인 무사항이므로 적법한 조치라고 재청하다.
- 정종우 대표이사가 제1호 의안 : 법인 정관변경과 법인 등기 정정 의결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7. 의결내용

제1호 의안 : 법인 정관변경과 법인 등기 정정 의결, 원안대로 의결하다.

8. 폐 회 : 정종우 대표이사가 폐회를 선언하다.

2020년 6월 12일

위 사실을 확증하기 위하여 참석이사 전원이 날인함.









 사회복지법인 우리동네사람들

대표이사	정	종	우	
이 사	김	인	규	
이 사	박	세	영	
이 사	신	수	식	
이 사	양	순	분	
이 사	이	철	우	